

### ▲ 현황 및 문제점

- 1) 현재는 연구학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이 규칙에서, 연구학교에서 연구를 했을 때의 연구비와 연구 운영비, 교원의 배치와 우대조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3) 다음은 [현장교사의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질적 연구]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14, Vol.31, No.3, pp.291 ~ 319)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연구교사 운영에 대한 최근의 연구입니다.)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학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지닌 교사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교육정책자문회 등 각종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은 극히 소수만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연구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가 다른 학교의 교사들에 비해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받게 되고 결국 연구학교 운영을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구학교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의 대부분은 가산점을 연구 참여의 가장 큰 유인책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행·재정 지원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교사에게 있어 승진과 직결되는 가산점 문제는 연구학교의 참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연구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모두 가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산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사들은 연구학교의 운영에 깊이 참여하며 자신들의 노력이 수업 이외의 부분에 사용되는 것을 꺼린다. 아울러 이들은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고나 평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할당된 업무에도 거부감을 느낀다. ”

현재 연구학교의 운영에서 연구 교원들의 유인이 적습니다. 현직 교사들의 참여도가 낮을 때, 실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 4) 다음은 [현장교사의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질적 연구]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14, Vol.31, No.3, pp.291 ~ 319)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연구학교의 예산 산정을 해서는 먼저 연구학교 운영 업무가 학교 본연의 업무인가 아니면 부가인 업무인가 하는 구분이 필요하다. 학교 본연의 업무라면 연구학교 운영에 투입된 교사의 노력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부가인 업무라면 투입된 교사의 노력에 대해 일부라도 연구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구학교 운영 체제에서는 여타의 학교에서 하지 않는 별도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지만 교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위탁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비는 시설 개선비나 보고서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며, 이에 들어간 교사들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는 가산점으로 대신하는 실정이다.”

현재, 연구학교 업무에 대한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능력있는 교원이라도 추가적인 연구를 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연구를 할 당 받아도 의미있는 연구가 나오기 힘듭니다.

## ● 대안

1)

연구 교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것은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에서 착안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에서는 모든 교원이 석사 이상의 교원으로 연구가 가능한 교사입니다.

100% 연구와 수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학업 경쟁이 적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학업경쟁을 줄이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다만, 최소한 연구할 수 있는 교원을 조금이나마 일정비율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교원을 중심으로 새롭고 효율적인 교수법이 확산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연구학교 제도는 학교 단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연구교원에 대한 대우가 없다면, 있어도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타 학교로 교수법이 확산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구교사 제도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구교사라는 자격에 따라 제도적으로 대우받기 쉬우며 그 때문에 연구 수행이 가능하며, 학교자체로 교수법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연구교사는 최소 교육학 석사 이상 학력의 소유자이며, 우수한 연구결과와 시범수업 실적이 있어야함. (혹은 사범대나 교대에서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방안. 적어도 4년의 시간으로는

모자람.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논문과 그 발표도 조건에 들어감..)

◎교수법과 교육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교원을 중/고교에 과목당 한명씩 배치. (모든 과목에 대해서 불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주요과목만은 배치)

◎수업/방과후 수업을 통해 교육법/교수법 연구와 적용. (일반교사와 다른점은, 행정, 혹은 담임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점. 연구와 교수법 개발에 맞춘 교사)

◎워크샵,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발표, 토론

◎기존의 정교사 또한 연구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다만, 의미있는 연구와 시범수업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연구교사는 수업과 연구를 위주로 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습니다.

성과급은 1. 연구에 따른 학업 성취도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수준의 성과를 냈는가.

2. 그 방식이 많은 타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인가.

3. 학생들이 무리 없이 수업 진행 가능한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인가.

에 따라 결정합니다.

1 항목의 평가는 성취도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합니다. 2 항목의 평가는 설문조사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연구 성과를 게시한 학술지에서 진행합니다.

3 항목의 평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업 반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하여 진행합니다.

2)

◎연구 교사를 평가하기 위해, 수업 성취도를 평가할 심사위원을 양성합니다.

이때의 평가 지표는 현재 쓰이고 있는 교육 성취도 척도를 이용합니다.

교육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는데, 그 방법들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양성해야합니다. 연구교사가 정말 잘 연구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모든 기준을 통과한 교원에게, 연구교사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현재는 고1부터 3,6,9,11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를 2번으로 줄이고, 그 모의고사는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문제들로 구성합니다. 현행 교육청 모의고사는 질이 떨어진다는 평이 학생들에게 많습니다. 조금만 더 개선한다면, 성취도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기대효과

1. 공교육에서 직접 연구와 적용, 일반 교사들의 교수법 수용.. 이 과정에서 공교육의 질 향상, 학생들과 학부모의 공교육의 신뢰감 형성. 공교육의 변화의 영향력이 커짐. (기존 연구학교는

시행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연구학교 이외의 학교에 있는 교원은 굳이 연구학교와 교류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연구교사가 학교마다 있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음).

2.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맞는 교육법과 커리큘럼을 빠르게 연구할 수 있음. 실제로 적용까지 가능함. (현재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그때 이론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연구교사로 인해 가까워질 수 있음. 실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
3. 하위권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학생들또한 교수법 연구를 통하여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음. 현재까지는 상위권을 위한 교육뿐이었음. 그 이유는 그게 편하니까. 하위권또한 이해시킬 수 있으려면, 선생의 실력이 매우 좋아야함. 그것을 위한 교수법 연구 와,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함. 또한 이것은 실제 교육을 반영해야함. 그렇기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연구까지 겸할 수 있는 교원이 필요함.